

# 建築界뉴스 - 스

## 奢侈性建築許可에住宅債券消化

經濟長官會議는 庶民住宅建設擴大方案으로 建築抑制措置를 全面的으로 解除함과 同時に 奢侈性建物과 豪華住宅 建築許可時에 國民住宅債券을 消化케 하여 庶民住宅資金造成擴大를 骨字로 하는 住宅建設 促進法施行令改正案을 議決 한다.

經濟長官會議가 24日 議決한 住宅債券消化方案을 보면 住居用 住宅의 경우 165m<sup>2</sup>에 231m<sup>2</sup>미만은 3.3m<sup>2</sup>당 1萬圓의 債券消化하는것을 비롯해서 6百60m<sup>2</sup>以上은 3.3m<sup>2</sup>당 5萬圓을 消化해야하며 住居用 以外的 建物로서 劇場, 映画館, 카바레 등은 3.3m<sup>2</sup>마다 1萬圓으로하고 鐵骨造의 경우에는 3萬圓 練瓦造 및 市道別債券消化基準은 다음과 같다.

첨가매입대상	첨가 매입총액
<p><b>• 건축허가</b></p> <p>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(공동주택인경우는 세대당 연면적으로 하며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의 증가로 165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73. 2. 26이전의 기존건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면적에 한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첨가매입토록 한다)</p> <p>가) 주거전용 건축물(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퍼센트 이상에 한하여 주거전용으로 본다)</p> <p>1) 165평방미터이상 231평방미터 미만. 3.3 평방미터 10,000</p> <p>2) 231평방미터이상 330평방미터 미만 3.3평방미터 당 20,000</p> <p>3) 330평방미터이상 600평방미터 미만 3.3평방미터당 30,000</p> <p>4) 666평방미터 이상 3.3평방미터당 50,000</p> <p>나) 주거전용이외의 건축물(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여 재무 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교육용, 종교용, 자선용,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)</p> <p>1) 극장·영화관·빠·카바레·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장용 건축물 3.3평방미터당 10,000</p> <p>2)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.3평방미터당 3,000</p> <p>3)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3.3평방미터당 2,000</p> <p>4)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3.3평방미터당 1,000</p> <p>5) 관광사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3.3평방미터당 1,500</p> <p>다) 기타 유흥음식점 영업 및 음식점 영업은 허가(음식점 영업은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1) 서울특별시·부산시, 대구시, 인천시 150,000</p> <p>2) 각 도청소재지 100,000</p>	

3) 기타 지역 70,000	
라) 유제품·마아가린 및 소트닝유, 식육제품, 통조림 또는 병조림, 청량 음료 및 당류 제조업 허가	
1) 서울시·부산시·대구·인천 200,000	
2) 각 도청소재지 150,000	
3) 기타지역 100,000	
다) 여인숙업(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에 한한다.) 100,000	
1) 서울시·부산시·대구시·인천시 70,000	
2) 각 도청소재지 50,000	
부동산 등기	
가)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	
1) 주거전용 건축물	
건축물(토지포함)의 과세 표준액이	과세 표준액의
가. 1,000만원 이상 2,000만원 미만 20 / 1,000	
나. 2,0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 30 / 1,000	
다. 3,000만원이상 4,000만원미만 35 / 1,000	
라. 4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 40 / 1,000	
마. 5,000만원이상 1억미만 50 / 1,000	
바. 1억이상 60 / 1,000	
2. 주거전용 건축물이외의 부동산	
과세 표준액이	과세 표준액의
가) 1,000만원이상 5,000만원 미만 20 / 1,000	
나) 5,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/ 1,000	
다) 1억 이상 40 / 1,000	
나. 상속 보존	
과세 표준액이	과세 표준액의
1) 1,000만원이상 3,000만원 미만 20 / 1,000	
2) 3,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/ 1,000	
1억이상 50 / 1,000	
다. 지당권 설정 및 이전	
과세 표준액이 500만원이상	과세 표준액의
(다만 첨가매입	
금액은 5,000만圓	
을 초과못함)	